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8.

의안 번호	465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나. 상정의결

-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0. 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장원석)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 감면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1.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의 감면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직접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1.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7.30.~2021.8.20.)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12.29. 일부개정 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12.31. 일부개정 되어 해당 법령 모두 2021.1.1. 시행되었는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적 성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운영상 나타난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내’로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것으로 보임.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한편, 2020.13.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개정사항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현재「지방세법」제2조제4호에서는 건축물[1]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동일하게 과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4조[2]에서는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

---

1) **지방세법**

제2조(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

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임.
- 안 제13조(감면신청)에서는 감면신청에 따른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개정하여 감면신청 결정이 ‘처분적 성격’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중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는 해당 개정 법령이 2021.1.1. 시행되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제3조(유효기간)에서는 2023.12.31.까지 한시법적 성격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시법적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65호

제안일자 : 2021.10.18.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과 무관한 부칙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안 부칙 중 유효기간 및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 삭제(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5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세 무 1 과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감면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 1. 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 관련 조항의 문구 삭제 및 수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관련 조항 문구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보완(안 제11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7.30. ~ 8.20.)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 ---------- ---------- ---------- 건축물 및 주택---------- ----.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 ---------- --- 안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 조례 문구 수정

4. 작성자

- 세무1과 세무7급 이경일(5642)